

수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USW-IACUC) 규정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the University of Suw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USWIACUC '로 한다)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및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혹은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원대학교 내에 있는 자를 호선한다.
-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험동물의학을 전공한 의사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 본교 교수 중 법 관련 전공 혹은 동물실험과 관계없는 교수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 등을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종료 및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의 관련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실태평가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혹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위원에 대한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가 가결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심사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

-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을 구입하고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 ⑤ 연구자는 실험이 종료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 후 동물실험 및 시설의 점검과 평가 등)

-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수원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학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연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